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11월 18일 (수) · 주간제 47호 · 통권 제 1493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부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1/ 18 통권 149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패션없는 문화강국은 없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국정감사·감사원 감사·내부감사·기업회계감사의 유사점, 차이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인 도소매업자가 지방이전시 추가된 제조업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아님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개인의 신규법인 단순설립과 기존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차이 10가지 >

개념구분	단순신규법인 설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계속 존속+신규법인과 공존	개인사업자 없어지며 신규법인만 존재
기존 자산부채	안 넘기거나 일부만 넘김 (off-balance)	실물자산, 부채, 고객, 영업권 모두 넘김(on-balance)
무형자산	개인사업자 계속보유	무형자산도 신규법인에 이전
인적자원, 기술	사업자 본인, 제3자가 활용 가능	사람과 기술이 모두 법인에 귀속
은행의 신용평가	개인의 신용이 법인에 연결 안되고 단절되어 법인대출 불능	개인신용, 업무실적이 모두 법인에 연결되어 법인대출 유리
거래처 관계	판매처, 납품처 모두 별도계약이므로 개별계약 불안	모든 거래관계, 외상, 매출, 매입 연계되므로 안전
개인의 채무문제	개인채무가 법인에 연계안됨 (개인채무 많은 경우 선호함)	개인의 우발채무, 부외채무가 모두 법인으로 따라옴
실제 활용쟁점	영업주체를 하나 더 만들어 개인사업자 매출의 분산	영업주체는 하나로 지속, 매출분산불능
가족분산승계	자녀주주명의 신규법인 설립으로 분산 가능	기존 사업자(대주주)의 지분대로 유지(자녀분산불능)
자본금 계상	현금불입액만 인정	영업권 차익을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 가능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3 호 / 주간 47호

2020. 11. 18.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FAX : 02) 718-8565

목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피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의 신규법인 단순설립과 기존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차이 10가지	표지
긴급 시사해설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 내부감사 · 기업회계감사의 유사점, 차이점	2
C E O 에세이	패션없는 문화강국은 없다	4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소포우편 이용한 수출은 소포수령증이 영세율 증빙서류임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추가로 받는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함 -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 급함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함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 비교 - 연금 종류별 소득세 과세 방법과 건강보험료 과세여부	10
직장인 Survival	실력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 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954, 2020.04.20) -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 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 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항임 (서면법인-4076, 2020.02.27)	13
세정뉴스와해설	OECD 못 미치는 소득세 과세… 초고소득자 세율 세분화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인 도소매업자가 지방이전시 추가된 제조업 소 득은 감면대상소득 아님	13
세무정보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16 24 27 37
회계정보	-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48
세무환경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 재정환율	47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 내부감사 · 기업외부회계감사의 유사점, 차이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국정監査	감사원監査	내부監事	외부회계監査
감사의 개념	국가행정기관 등의 전반감사	정부, 지자체, 공기관, 공기업	상법상 모든 회사의 내부監事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외부 會計監査
감사의 이유	국정수행, 예산 집행의 적정성	좌동	기업 경영의 업무 감사 중심	재무제표의 적정성, 공익보호
감사대상	중앙행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세입세출 결산검사, 회계감 사, 직무감찰	각 회사 경영진 (대표, 이사 등)의 경영업무	피감회사 경영 결과의 회계처리 와 재무제표
감사주체	국회의원 (각 상임위원회)	감사위원, 감사원, 공무원들	상법 제409조로 선임된 감사 (회계전문가 등)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칙안점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조사법 률 등	감사원법 제21, 22, 23, 24 조	내부통제관리제도 와 내부감사업무 규정	기업회계기준준수 회계감사기준, 준 칙 등

현장감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수행 보고, 서류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 청문회 개최 등, 국정조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사(수입, 지출, 재산취득, 보관, 처분비용) 직무감찰(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직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직무집행감사 영업보고 요구, 재산조사 이사는 손실염려 사항 보고 주총서류 조사 의견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증거 확인, 대조, 질문 독립외부조직에 조회서발송 분석적 검토, 재무분석 등
감사결과	국정감사, 조사보고서	대통령과 국회 보고 (위법, 직무불이행 등)	감사록 작성(내부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효과	위법, 부당변상, 징계, 제도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요구	사법기관에 고발,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	위법부당주총보고 (부적합시정 경영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외부이해관계자 보호

패션없는 문화강국은 없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출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패션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평생 패션 산업에 종사해 왔으면서도 이 물음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게 패션이다.

패션 산업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탓에 무엇인지에 대한 감은 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다. "패션은 물의 흐름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항상 파악해 두었다가 소비자의 입맛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팔 준비를 해야 한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연성과 변신이다.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흐르게 마련이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찾아내는 것이 패션이다. 바로 Fila의 생존 방식이다.

또한 "패션은 문화다."

고도의 문화적 축적과 배경 없이는 멋진 패션이 탄생할 수 없다. 문화는 물과 마찬가지로 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패션도 그렇다.

패션 하면 이탈리아가 연상될 정도로 이탈리아 패션이 유독 발달한 이유가 있다. 이탈리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유산을 갖고 있다. 로마와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가 그것이다. 미켈란젤로와 레오ナル드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쌓아 놓은 미적 감각이 현재에까지 와서 이탈리아 패션의 기반이 되었다. 패션의 기본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모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탈리아는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우며 흉내내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창조해 왔다.

한국의 패션도 최근에 눈부신 발전을 했다. 독자적인 브랜드 창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패션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 갈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필라제품의 디자인을 이탈리아에서 한 것으

로 소비자들은 대개 짐작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99%를 한국에서 만들어 낸다. 처음에는 본사나 필라 USA의 디자인에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참고만 할뿐이다. 오히려 요즘은 거꾸로 Fila코리아가 디자인 한 제품을 외국이 가져가고 있다. 본사가 우리 것을 채택하여 전 세계에 뿐만 아니라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디자인 한 제품이 인기가 높다. 특히 일본과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필라 본사에서 개발한 것보다 Fila코리아의 디자이너 작품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직접 우리 제품을 많이 사간다. 아시아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외국브랜드를 그대로 따라하는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필라라는 외국브랜드를 들여와 우리 것으로 소화해 수출로 연결시키고 있다.

앞으로 세상은 잠잠 복잡해지고 변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어떤 것도 오래 좋아하지 않고 금방 싫증을 느낀다.

이런 속에서 패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경향의 흐름을 짚어내는 문화 산업이다. 이런 패션 산업이 잘 되면 다른 산업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문화 강국으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패션 산업 자체도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패션 산업에서만 선진국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포우편 이용한 수출은 소포수령증이 영세율 증빙서류임

Q

영세율, 직수출의 경우 해외업체와 납품을 하기로 하고 물건을 DHL로 샘플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단가가 결정이 안되어 DHL금액을 소액으로 적고 추후에 1년치 미단가로 보낸 물건에 대해 정산을 받아 외화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면장이나 DHL영수증이 없는데 부가세 영세율신고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A

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가 영세율증빙서류이며, 소포우편 등을 이용한 경우는 소포수령증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소포수령증도 없다면 영세율입증서류가 없게 되는데, 세법상 다른 증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영세율신고후 계약서사본이나 외화가 입금된 내역으로 증빙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추가로 받는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함

Q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외부조정대상 기준수입금액이 1억5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수입금액에 수입금액제외 부분도 상기기준금액 책정시 산입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전년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액이 아래와 같을경우 외부조정대상자인지요?

#. 과세표준명세

임대업 : 1억 2천만원

수입금액제외 : 4천만원(임차인 전기료)

합계 : 1억 6천만원

A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을 제외한 청소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기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소득세법 통칙24-5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통칙 24-51-1【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 ·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 · 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 · 산

- 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 ·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 Q** - 기존에 5/10 1억원의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2천만원에 대해 8/1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필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8/10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2천만원으로 한 건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 +8천만원으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A**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유에 따라 발급방법 등이 다른데, 귀사의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증감액만큼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2천만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함

- Q** 제품 공급 업체에 제품 품질의 향상을 위해 지출 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A** 제품 품질의 향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무엇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발급하는 것인데, 귀사가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라면 일종의 접대성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대출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큰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거래처의 부도나 기타의 상황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유입 취득하거나 토지·건물·기타 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도 한다.

매출채권 등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매출채권 등의 가액과 변제받는 자산의 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액과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되는 자산 가액의 차이에 따른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매출채권 등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유입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정상가액, 즉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출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변제로 받은 자산의 시가금액이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면 된다.

차) 고정자산 800

대) 외상매출금(전액) 800

♣ 서면2팀-1468, 2006.08.02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의 미회수 금액의 처리

자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어 채권의 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채권 잔액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손처리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액보다 미달하는 고정자산을 변제받으면서 채권액이 청산된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동 고정자산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은 사후약정에 의하여 채권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미회수액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 한다.

차) 고정자산	500	대) 매출채권	800
접 대 비	300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의 채권의 경우로서 미달되는 자산을 변제받으면서 채권액이 청산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해 손금불인정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세무상 손금부인 계산한다

차) 고정자산	500	대) 기타채권	800
기 부 금	300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액보다 미달하는 고정자산을 변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도산 등으로 나머지 채권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등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면 된다.

① 외상채권 중 일부 대물변제 받은 시점

차) 고정자산	500	대) 매출채권	500

② 대손처리 요건 충족되는 시점

차) 대손충당금	300	대) 매출채권	300

365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 세제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 발표자료 등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34.4	36.1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2.0
독일	29.5	29.6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일본	39.5	39.5	39.5	37.0	32.1	30.0	30.0	30.0	29.7	29.7
이탈리아	31.4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한국	31.4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캐나다	29.4	27.7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8
미국	39.2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영국	39.2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G7	33.1	32.8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3
OECD	25.1	25.1	25.0	25.1	24.9	24.7	24.4	24.2	23.7	23.5



종합소득세 서울

소득종류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연금 종류별 소득세 과세 방법과 건강보험료 과세여부

연금 종류	과세 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과세 대상 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 과세	연금수령액의 30%에 부과
	과세 대상 연금액 - 2002년 이후 납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퇴직연금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적용세율 10년 차 이전 :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	해당 없음
연금계좌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 과세	
주택연금	해당 없음	



은행권 최고금리 적금

은행	상품	주요내용	최대 금리수익(세후)
하나은행	하나일리있는적금	최고금리 연 12%, 월 10만원 정액적립, 만기 1년	6만5988원
신한은행	신한플러스멤버십적금	최고금리 연 8.3%, 월 납입한도 30만, 만기 6개월	3만6864원
우리은행	우리Magic6 적금	최고금리 연 6%, 월 납입한도 50만원, 만기 1년	16만4970원
국민은행	KB마이핏통장	최고금리 연 2.7%, 가입연령 만 18세 ~38세, 납입한도 50만원, 만기 1년	7만4237원
농협은행	NH가고싶은대한민국적금	최고금리 연 3.2%, 지역방문 인증시 우대금리, 납입한도 30만원, 만기 1년	5만2790원



실력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

IT기기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척은 기업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IT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 측면이 중요한 사진과 디자인 등의 영역은 다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과 디자인 등의 영역도 '글'로 설명하지 않고, 시각적인 형태로만 표현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표현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을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피터드러커, 톰피터스, 다니엘핑크, 공병호 박사 등이 사업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콘텐츠 창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콘텐츠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중 하나는 투입이 있어야 산출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책을 읽지 않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것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달에 몇 권, 1년에 몇십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지식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최소 한 달에 10권 이상, 1년에 150권 이상은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읽는 책도 중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한다면 소설보다는 경영/경제 서적 위주로 읽고 한 두 권 읽기보다는 개념이 정립될 때 까지 여러 권의 도서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즈니스 독서'라고 합니다. 물론 소설이나 만화책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판례예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954, 2020.04.20

질의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단체'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인 도소매업자가 지방이전시 추가된 제조업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아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법인-2005, 2020.02.27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2014년 11월 본사를 경기도 **에서 충주로 이전하고, 향초 등 도소매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해 본사의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였음
- 질의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 최근에 추가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 사업을 신설하였음

질의내용

-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법령법인-4028, 2020.04.17

■ 질 의

-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 자동차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회 신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4076, 2020.02.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상압잔사유(AR, Atmospheric Residue) 등을 원료로 투입하여 정유제품과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을 건설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생산된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며 프로필렌옥사이드는 폴리우레탄 기초

원료로 사용됨

- 가치가 낮은 잔사유를 촉매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설비가 잔사유고도화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 RUC)이며, 분해 후 순도 높은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설비를 올레핀하류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 ODC)이라고 함
 -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은 분산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잔사유고도화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 RUC) 및 올레핀하류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 ODC)이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 회 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OECD 못 미치는 소득세 과세… 최고소득자 세율 세분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과세표준 5억원~7억원 이하 구간은 42%,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올해 2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최상위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 끊기면 그린 뉴딜 차질

친환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

만 3083대로 이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87%(68만 9495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인 세제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원, '비외감기업' 종속기업 편입 적용 유예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1),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국세청, 2020. 11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통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 을 '21. 3. 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함.
 -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 됨.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종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준 액 전년도 확정신고 결정·경정한 기한후·수정신고 = [중간예납 + 자진납부 + 추가납부세액 +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세액 세액 (가산세포함) (가산세포함)

*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 2. 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붙임 4,5)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 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붙임 4,5)

※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7천 5백만 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 · 납부기간 : '20. 11. 1.(일) ~ 11. 3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 3)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붙임 3)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업 종 별	'19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억 원 미만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 · 유통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 ·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 11. 10. (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 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 11. 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월)에서 '21. 4. 30. (금)로 자동 연장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 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20.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 § 65①)
 -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 76)
 -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0.6.30.) 이전에 휴 · 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 § 123, 소칙 § 64)
 - 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나.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 · 화가 · 배우 · 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 증권매매의 권유 ·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 § 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 § 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 86)

붙임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흠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table border="1" data-bbox="342 690 1224 788"> <tr> <td style="text-align: center;">00:30~23:30</td><td style="text-align: center;">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7:00~23:30</td><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td></tr> </table>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 인터넷으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table border="1" data-bbox="342 1378 1224 1476"> <tr> <td style="text-align: center;">00:30~23:30</td><td style="text-align: center;">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7:00~23:30</td><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td></tr> </table>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시간 : 2020년 11월 30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고지세액의 이체 납부(분납)도 가능 					

불임 3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접속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의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 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⑥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2020. 11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 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 2②) 미적용
- '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 · 전송
 -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 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초연결네트워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제1항에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0.6월, '20.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0.6월말



- 및 '20.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참 고

투자확대계획서 (작성 예시)

투자확대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법인명(상호)	(주)투자
대표자	김투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전화번호	02-1000-1000	중소기업여부*	[여] <u>**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u>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60,000,000,000)원		
*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19사업연도 기준) - 단, 자산 2천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5백억 원 미만임			
2. 2021사업연도 투자확대 계획			
구 분	금 액(비 율)	기 준	
① 2020사업연도 투자금액(기준)	6,000,000,000원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최소 투자금액은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예시)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55,000,000,000원 가정 	
② 2021사업연도 투자금액(계획)	7,265,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③ 증가금액(②-①)	1,265,000,000원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③ / ① * 100)	21.0% (2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은 10%, 수입금액 5백억 원~1천5백억 원 미만은 20%이상 증가하여 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2021사업연도 중에 위와 같이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0. 11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 ~ 1,886억 원(법인) 재산 보유
- (기업자금 사적 유용)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
- (호황 현금 탈세)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
- (반칙 특권 탈세)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I.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전수를 대

폭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으로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6,306('18) → 16,008('19) → 14,000여건('20예정)

-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저금리 기초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金)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창업주(1세대) → 자녀(2세대) →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10년대 증여세 관련 규정 개정 주요 사항) '12.1.1.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16.1.1.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도입,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도입 등

II.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

-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초 속에서도 불공정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 ~ 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 재산 보유 현황〉

법인 사업자(32명)				개인 사업자(6명)			
합계(억 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합계(억 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1,886	28	109	1,749	112	1	52	59

-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노블레스 오블리주)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

합 계	〈유형1〉 기업자금 사적유용	〈유형2〉 호황 현금 탈세	〈유형3〉 반칙 특권 탈세
38	13	22	3

○ 기업자금 사적 유용 : 13건

- 이번 혐의자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홍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 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 제비 등에 사용	3
▷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억 원 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 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 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 (위장 계열사 설립) 前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홍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

* 탈세 혐의자 1인에 복수의 탈루유형 발생

○ 호황 현금 탈세 : 22건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 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 (호황분야) 골프장·캠핑카·대형 동물병원 등 레저·취미분야 및 고액 부동산 보유 유명인사 등	12
▷ (고소득 전문직)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및 성형외과·피부 과 등 의료분야 전문직	10

○ 반칙 특권 탈세 : 3건

-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에도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 *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기회가 개인의 성과와 노력이 아닌 反경쟁적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美 사회학자 찰스 틸리)

주요 혐의 유형	인원
▷ (기회 사재기)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富와 경영권 승계 * 상속증여세법 §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 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 회피 * 상속증여세법 §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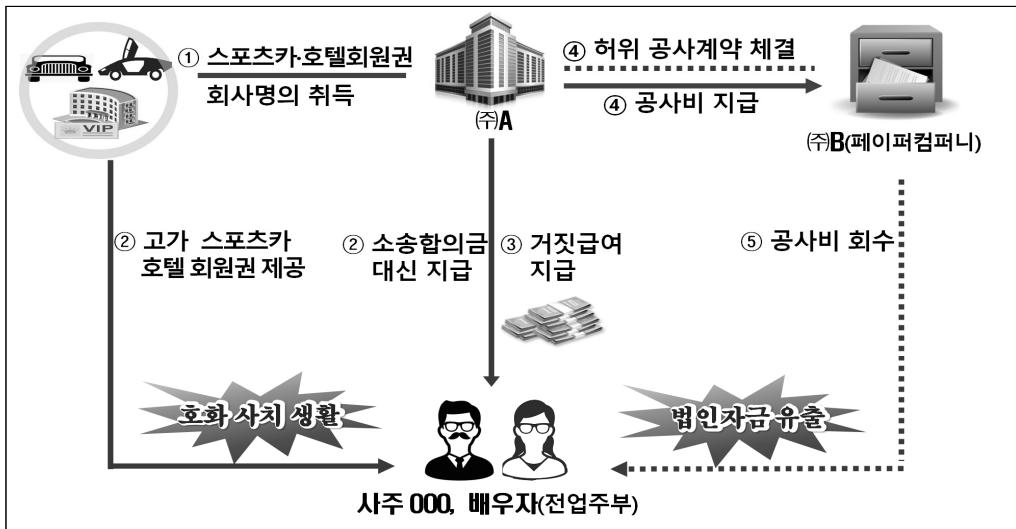
III.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입니다.

불임 -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 사례

사적유용 탈세사례 ①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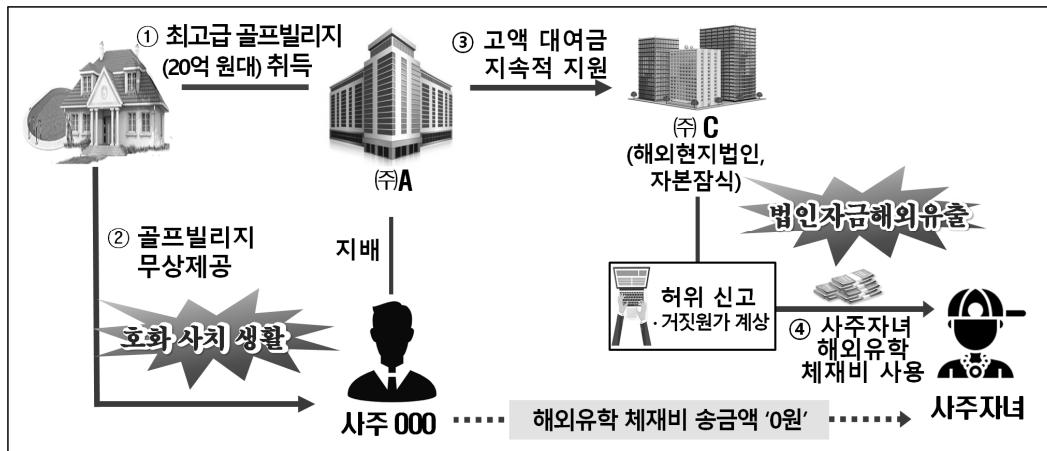
-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 사주 000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 지급
 -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 혐의의 적출

● 조사결과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000억 원 추징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억 원을 추징
-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범칙 처분

사적유용 탈세사례 ②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 원 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
-------------------	---

● 주요 혐의내용



-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기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 해외현지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
 - 이와 관련, 사주는 자녀유학비 지원 목적의 외화송금이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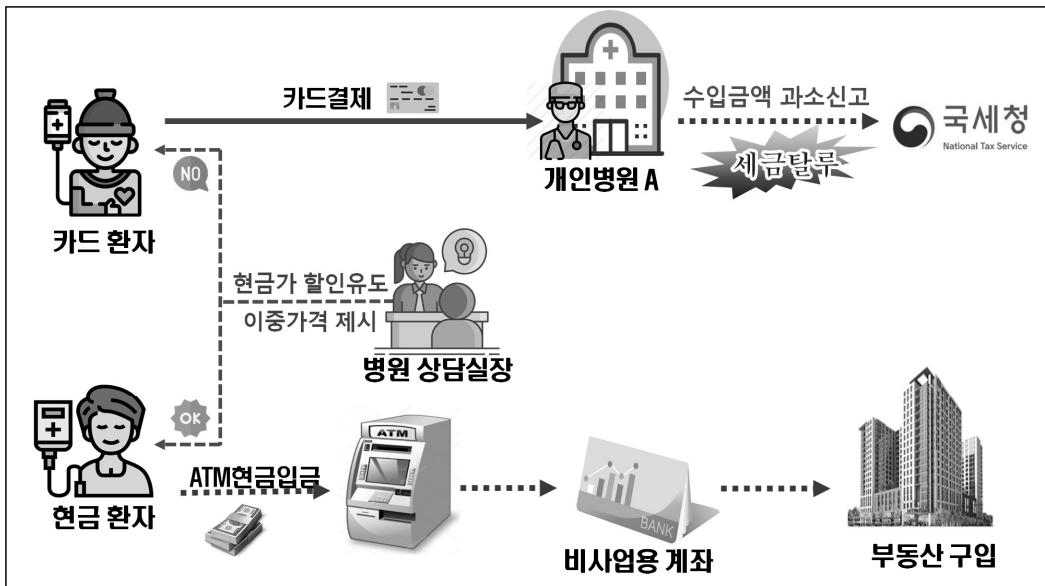
● 조사방향

-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사적유용
탈세사례
③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 조사내용



-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
-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탈루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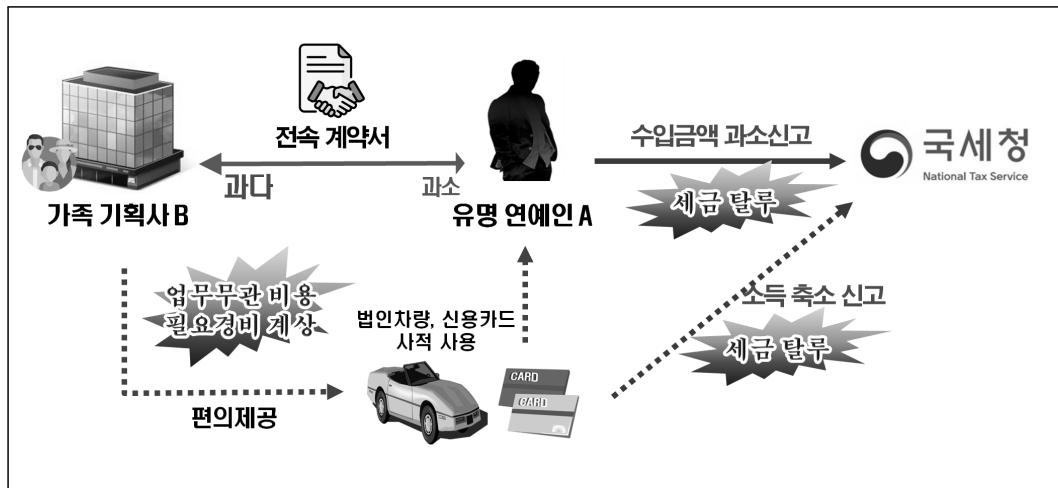
- 종합소득세 등 ○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 억 원 처분



호황현금
탈세사례
②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 탈루

● 조사내용



-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
-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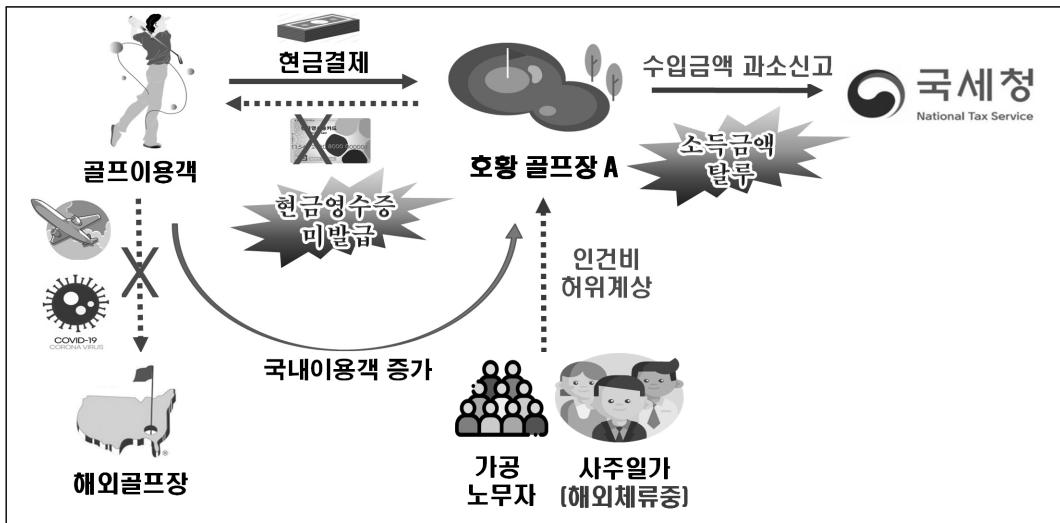
● 조사결과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호황현금
탈세사례
③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
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 골프장을 영위하는 A 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
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
- 또한, 사주○○○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 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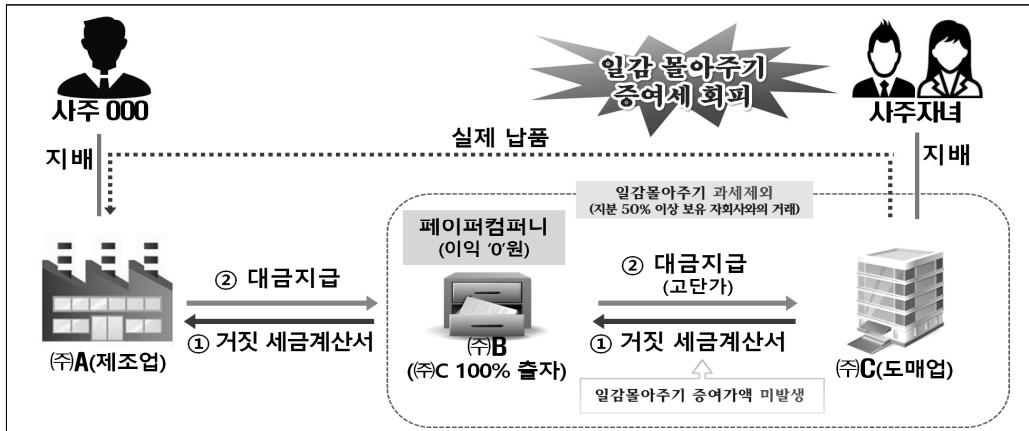
● 조사방향

-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엄정하게 조사

반칙특권
탈세사례
①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 주요 혐의내용



-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이 신설('12년 이후)되자,
-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 거래(위장)로 가장하여
- C→B 간 거래를 통해 기준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함
-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준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 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C)이 50%이상 소유한 자회사(B)와의 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규모를 축소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음

특수관계 법 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과세제외*
	수혜법인 총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수혜법인(C)이 50%이상 보유 자회사(B)로부터 받은 일감 매출액 전부	

● 조사방향

- 끼워넣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국세청, 2020. 11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검증인원: ('17년) 1천 명 → ('18년) 1.5천 명 → ('19년) 2천 명
-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 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함.
- (검증 대상) 특히, 금년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 명(전년 대비 1천 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년 4월 구축)
- (향후 계획)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 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

세무검증 실시 배경

1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 강화



-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검증규모 확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검증인원: ('17년) 1천 명 → ('18년) 1.5천 명 → ('19년) 2천 명
 - (과세기반 확충)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20년 4월)하여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하였습니다.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14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자료('19년~)
법원행정처: 확정일자('14년~),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19년~)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

- (전면과세 시행) 올해 신고('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 ✓ ('14년~'18년 귀속)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 '14년 3월)
- ✓ ('19년 귀속~)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전면과세
 - * 종합과세(서울 6~42%)와 분리과세(서울 14%) 중 선택하여 신고

2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실시

1 검증 대상자 선정

-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고가·다주택자*의 '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 보다 크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19년 검증인원 2천 명 → '20년 검증인원 3천 명(1천 명, 50% 증가)

유형1	외국인 임차	✓ 외국인에게 주택임대 & 임대소득 탈루혐의
유형2	고액 월세 임대	✓ 고액 월세 임대료 수취 & 임대소득 탈루혐의
유형3	고가·다주택 임대	✓ 고가·다주택 임대 & 임대소득 탈루혐의
유형4	빅데이터 분석	✓ 임대자료 없는 경우 빅데이터에 의해 탈루혐의 분석

[1] 외국인 임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 등 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2] 고액 월세 임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임대차계약 신고(민간임대주택법) 등

[3] 고가·다주택 임대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4] 빅데이터 분석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빅데이터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붙임1 참조) |

사례 1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

- ✓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사례 2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 ✓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사례 3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사례 4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 ✓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5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부당 세액감면

- ✓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

2

주요 추진 방향

검증의 실효성 확보

01 검증 대상자 선정

02 주택임대소득 검증

03 검증 종결

- ✓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
으로 연결되는 경우 범위확대

- ✓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 · 경비 검증 병행

- ✓ 검증결과를 내년 소득세 성실
신고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 (범위확대) '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
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하여 검증합니다.
- (필요경비 검증)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합니다.
- (검증결과 사후관리)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
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 (신속한 결과 통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통지하겠습니다.
- (절차 준수)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율
보호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

3

향후 계획

1 세원관리 지속 강화

- (감면관리 강화) 공적의무1)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2)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받은 세
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습니다.
 - 1)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 2)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점검 결과를 수집하여 부당 감면 점검
- (과세기반 확충)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
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시군구청에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임 1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사례 1	<p>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p> <p>✓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 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p>
------	--



◉ 주요 혐의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송파구 ○○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없으며, 전액 월세)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0 억 원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검증 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임대여부 확인 및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사례 2	✓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 ○억 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하여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으나 과소신고
 -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천만 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 *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됨.

◎ 검증 사항

-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사례 3	<p>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p> <p>✓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p>
------	--



● 주요 혐의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백억 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였으나,
 - 전세금 ○○억 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text{간주임대료} = (\text{전세금 등 } (-) 3\text{억 원}) \times 60\% \times \frac{1}{365} \times \frac{\text{정기예금 이자율}}{(\text{윤년은 } 366)}$$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2.1%

● 검증 사항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검증

사례 4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
------	---



● 주요 혐의 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0억 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

● 검증 사항

-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1) 및 수입금액을 분석2)
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 1) 본인·가족 거주 및 공실 여부 등 확인
 - 2)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

사례 5	<p>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부당 세액감면</p> <p>✓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p>
------	--



◎ 주요 혐의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는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0천만 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하고,
 -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 0천만 원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됨.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

◎ 검증 사항

-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사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계상 및 감면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부당 감면 검증

붙임 2 –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및 과세기준

◎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 '20년 신고('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14년~'18년 귀속)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 '14년 3월)
 - ('19년 귀속~)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전면과세

*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 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2)
 -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1주택자도 과세됨.
 - 2)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주택 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과세방법)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세율 14%) 선택가능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6일 (금)	11월 9일 (월)	11월 10일 (화)	11월 11일 (수)	11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130.90	1124.40	1115.60	1115.90	1112.40
일 본 엔 (JPY)	1091.66	1089.06	1059.60	1059.89	1055.46
영 국 파 운 드 (GBP)	1486.34	1480.27	1467.91	1480.35	1471.26
캐 나 다 달 러 (CAD)	865.26	862.70	857.82	856.34	851.83
홍 콩 달 러 (HKD)	145.88	145.01	143.90	143.91	143.45
위 안 화 (CNH)	170.17	170.00	169.71	168.95	168.86
유 로 화 (EUR)	1337.18	1336.97	1318.25	1318.88	1310.35
호 주 달 러 (AUD)	821.83	818.73	811.60	813.10	809.72
싱 가 폴 달 러 (SGD)	837.33	834.53	827.54	827.76	824.58
말 레 이 시 아 링 기트 (MYR)	272.80	272.35	271.53	270.82	269.38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국세청, 2020. 11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니,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
 -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개정 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함('20.11.6일)

2 주요 개정내용

- ① '18년 일반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1),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1.12.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

3 향후 일정

- 외부의견 조회('20.11.10.~12.9.)를 거쳐 '20년 말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